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.

발 의 자 : 문 정 애 위원 외 6인

## 1. 개정이유

세입·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말까지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“매년 6월 10일” 에서 “매년 6월 1일” 로 개정(안 제4조제1호)

## 3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## 4. 입법예고 : 필요

## 5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

## 6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,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“(연간 회의총일수)”를“(연간 회의 총일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연간 회의 총일수”로 하며, 같은 조 단서 중 “의결을 거쳐”를 “의결로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그날이”를 “해당 집회일이”로 하며, 같은 조 본문 중 “10일”을 “1일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심의)”를“(심의·의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1항에 따른”으로, “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34조에 따른”으로, “기타 의회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법 제127조에 따른”으로, “기타 의회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4조,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,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연간 회의총일수)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연간 회의 총일수)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연간 회의 총일수----- ----- 의결 로 -----.</p>
<p>제4조(정례회의 집회일)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날이 토요일·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.</p> <p>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</p>	<p>제4조(정례회의 집회일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에 따른 ----- -- 해당 집회일이 ----- ----- ----- 1. ----- 1 일----- -----</p>

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·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.

2. (생략)

제5조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 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등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을 준용한다.

-----  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심의·의결) ① -----  
--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1조제1항에 따른 --  
- 법 제134조에 따른 -----  
----- 그 밖의 -----  
-----.

② ----- 법 제127조에 따른 -----  
----- 그 밖의 -----  
-----.

제6조(준용) -----  
-----  
----- 필요한 -----  
-----  
-----.